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향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32 발의연월일: 2025. 4. 22.

발 의 자:권향엽・이수진・박지원

정동영 · 윤종군 · 김기표

허성무 • 전종덕 • 이해식

박선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「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(국토교통부 고시)」을 통해 규정하고 있 음.

최근 12·29 여객기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제기되고 있으며, 조류충돌 발생건수가 연간 300회 이상으로 기록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.

이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,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충돌 예방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근거를 명시하여 조류충돌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항공안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의2 신설 등).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 예방 활동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(이 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고, 위원은 항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및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
-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조류충돌 발생현황 및 예방대책 분석에 관한 사항
- 2.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토지 이용과 환경에 관한 사항
- 3.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및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

- 4. 그 밖에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⑤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6조의3(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)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 예방 활동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(이하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자로 한다.
 -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제26조의4에 따른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- 2. 조류충돌 정보 및 조류관측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④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6조의4(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수립)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공항운영자는 전년도 조류충돌위험관리 실적과 해당 연도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,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조류와 야생동물에 대한 자료의 보고 및 수집 등에 관한 사항
- 2.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공항의 자원에 관한 사항
- 3.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의 조류 서식지, 이동상태 및 습성 등에 관 한 사항
- 4. 항공기의 이착륙 횟수와 항공기의 종류, 운항시간대 등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사항
- 5.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조류충돌예방활동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④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6조의2(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 서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 고 예방 활동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 다.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 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. ③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 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고, 위원은 항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 반직 공무원 및 국토교통부 소 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.

<u><신</u>설>

- 1. 조류충돌 발생현황 및 예방 대책 분석에 관한 사항
- 2.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 조 류를 유인할 수 있는 토지 이 용과 환경에 관한 사항
- 3.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 항 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 기 위한 대책 및 기술의 개발 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항공기와 조류의 충 돌 예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
- 5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26조의3(공항별 조류충돌예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)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 예방 활동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되, 위원회의 위원장은

<신 설>

해당 공항의 공항운영자로 한 다.

-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.
- 1. 제26조의4에 따른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2. 조류충돌 정보 및 조류관측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항공기와 조류의 충 돌 예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④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26조의4(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수립)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위하여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공항운영자는 전년도 조류 충돌위험관리 실적과 해당 연 도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을 매 년 1월말까지 관할 지방항공청 장에게 보고하고, 관할 지방항

- 공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위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조류와 야생동물에 대한 자료의 보고 및 수집 등에 관한

 사항
- 2.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공항의 자원에관한 사항
- 3.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의 조류서식지, 이동상태 및 습성 등에 관한 사항
- 4. 항공기의 이착륙 횟수와 항 공기의 종류, 운항시간대 등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사항
- 5.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충돌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조류충돌예방활동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
- ④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수 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
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